

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제2차 본회의)

2013. 5. 31.(금) 10:00~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

【목 차】

1.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

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5. 10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5. 1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5. 27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으로 일부제한구역의 가구간 거리를 확대 조정하고,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위탁 규정과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 주거밀집지역의 가구간의 거리를 확대 정의함 (안 제2조제5호)
- (2)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거리 조정함 (안 별표 1)
 - 소, 말 : 100m ⇒ 200m
 - 젖소, 사슴, 양 : 250m ⇒ 300m
 - 돼지, 개, 닭, 오리 : 500m ⇒ 800m
- (3)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 규정을 신설함 (안 제6조)
- (4) 가축분뇨 수집·운반업체의 대행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)
- (5) 가축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신설함 (안 제10조, 별표2, 제12조)
- (6) 기록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으로 일부 제한구역의 가구간 거리를 확대 조정하고,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위탁 규정과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
- 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